

□ 사업개요

- **(목적)** 중소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 서비스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수출중소기업 육성
- **(지원대상 및 조건)** 수출 규모별·역량별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지원한도 內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보조율 차등 적용

【 세부 지원대상 및 한도 】

(단위 : 백만원)

지원트랙	지원 대상	지원한도	국고보조율
내수기업	수출액 '1,000불 미만'	30	(매출액 기준) ~100억원 : 70% 100~300억원 : 60% 300억원~ : 50%
수출초보	수출액 '1,000불~10만불 미만'	30	
수출유망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45	
수출성장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70	
수출강소	수출액 '500만불 이상'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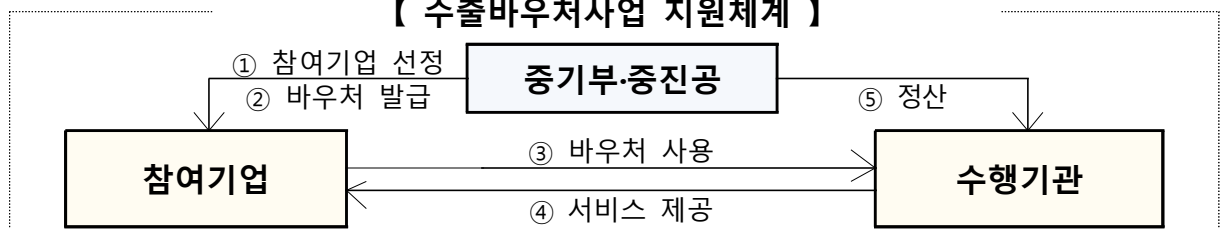
- **(지원내용)**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 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식(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디자인개발, 홍보/광고, 전시회/행사, 컨설팅 등 15개 분야

- “수출준비 → 해외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해외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서비스 통합 메뉴판” 마련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

- **(지원절차)** ① 선정기업에 바우처를 발급 → ② 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체계 】



□ 서비스 메뉴판 : 15개 서비스 분야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관세대응 패키지	관세피해 대응 관련 서비스	대체시장 발굴, 대체 공급망 확보, 관세 현지 분쟁 해결 등 관세 대응 관련 서비스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해외 진출전략 구축, 해외시장조사, 경쟁사 및 경쟁제품 분석, 소비자 리서치, 해외거래처 조사/발굴/매칭 등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특허/지재권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해외상표, 해외특허 및 실용신안,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 특허/지재권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현지등록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현지등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진단/분석, 신규 수출 브랜드 런칭, 마케팅/브랜드 전략, 디지털 마케팅 전략, 제품·개발 개선 전략 및 컨설팅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 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조사, 법률자문, 해외법인설립, 해외 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 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국제운송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제외)
무역보험·보증	수출관련 보험·보증서비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 ◆ 중기부 수출바우처를 포함하여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26.3.1일 기준)

* 예시 : 산업부(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농식품부(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해수부(수산식품기업바우처), 지자체(KOTRA 지역본부 연계 진행형 사업) 등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

- 단, 특정 수출서비스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개별사업(지사화사업, OK FTA, 인증취득, 박람회 등) 과는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 이후 각 사업간 동일 유사 항목으로 중복정산 금지

- ◆ 최근 2년 산업부·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 중 바우처 협약액 대비 사용률 미흡기업

구분	바우처 사용률	제재사항
‘24.2.1일 이후 수출바우처사업 선정기업	70%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70%이상 ~ 85%미만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선정 시 5점 감점
	85%이상	■ 제재 없음

- ◆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 ‘26년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단, 경영 독립성 등을 입증하는 경우 예외)

[특수관계기업의 정의]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정의) 제22호, 제23호에 따름(23p. 별첨 확인)

[예] A기업과 B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A기업 대표자의 가족 등이 운영하는 B기업 등 (자세한 사항은 관리지침을 참고 요망)

※ 동일사업장 등 사실상 동일기업으로 의심되는 경우, 실질적인 경영의 독립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주현황, 임차관계, 인력현황 등을 현장평가 시 점검할 수 있음

-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협약기간 내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는 참여 불가
 - * 단, 재무제표 상 제조매출이 있거나 현장평가 시 제조 활동(제품개발 및 생산, 원자재 매입, 생산설비 보유, 외주생산, 자사브랜드 개발 등) 확인되는 경우 신청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22. “특수관계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나. 대표자가 단독으로 또는 대표자와 특수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또는 특수이해관계인이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대표자 또는 특수이해관계인이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

다. 대표자, 특수이해관계인, 제나목의 자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대표자, 특수이해관계인, 제나목의 자가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

23. “특수이해관계인”이란 대표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6촌 이내의 혈족, 본인의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 운영기관 문의처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

- 조홍래 차장 (somema@kosmes.or.kr)

- 이태근 대리 (leetg@kosmes.or.kr)

< 수출바우처 문의처(기업 문의용)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 콜센터 055-752-8580